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**안 번 호** 제2023-004-028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 결 연 월 일 2023. 3. 8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6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# 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('이하 "보호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, 00000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| 피심인명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대표자 성명 | 주소 | 종업원 수<br>(명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        |

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('22. 11. 21. ~ 22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 가.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피심인은 민원접수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'22. 11. 22.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관하고 있다.

#### 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수집·이용 항목                   | 수집일         | 건수(명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민원서비스 사용자정보<br>(대표 홈페이지) | (필수)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DI값 | '21. 1 3. ~ | 101명  |

### 나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# 1)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대표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· 적용하지 않아, 숫자 1종 6자리 비밀번호가 적용된 사실이 있다.

※ 피심인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('22. 9)은 영대문자, 영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2 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규정

피심인은 대표 홈페이지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한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있다.

#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. 1. 27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3. 2. 6.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### 가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2호),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4호)를 하도록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, 이하 '고시'라고 한다.)에서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(제5조제5항)",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·남용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(제8조제2항)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,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, 고시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.

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, 피심인이 대표 홈페 이지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한 이력이 없는 것은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, 고시 제8조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>

| 21.11.11.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 |       |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위반행위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| 1회 위반           | 2회 위반 | 3회 이상<br>위반 |
| 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<br>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5조<br>제2항제6호 | 600             | 1,200 | 2,400       |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위 2021. 1. 27.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의 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%인 60만원을 가중한다.

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>

| : " : ! = !=\ " = = =/ |   |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|--|--|--|
| 기준                     | 가중사유  | 가중비율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 경우 | 기준금액의  |  |  |  |  |
| 위반의                    | 1. 세3오 케틴Յ커글 국 국의 제구기군에서 중한 중위가 3개에 예중하는 중구 | 50% 이내 |  |  |  |  |
| 정도                     | 2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| 기준금액의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세3오 귀한정치를 꼭 득의 제구기군에서 경한 정치가 2개에 예상하는 경구 | 30% 이내 |  |  |  |  |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정)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 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·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의 과태료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| 기준   | 감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경비율   |
|------|---|--------|
| 조사   | 1.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  | 기준금액의  |
| 협조·  | 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이내 |
| 자진   | 2.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| 기준금액의  |
| 시정 등 |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 | 40% 이내 |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| 과태료 처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위반조항                 | 처분 조항        | 기준<br>금액(A) | 가중액<br>(B)     | 감경액<br>(C) | 최종액(D)<br>D=(A+B+C) |  |
| 제29조(안전성확보 조치 의무 위반) | 법 제75조제2항제6호 | 600         | 60             | △300       | 360                 |  |

### V. 결론

피심인의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(과태료)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